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11
----------	-------

발의연월일 : 2025. 11. 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이재관

정일영 · 박지원 · 이주희

송재봉 · 박해철 · 허종식

박용갑 · 오세희 · 이병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으로, 지속적으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심화되고 있음. 특히, 첫째 비율이 높고 셋째 이상 자녀 비율이 낮아 다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저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교육비 부담이 지적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계 경제에 큰 압박으로 작용하여 추가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의 장은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 대하여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4조제2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를 “제6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제8항에”를 “제9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10항)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3항(종전의 제12항) 중 “제11항에”를 “제12항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다자녀 가구(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4조의4제3항 중 “등”을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으로 한다.

제34조의5제1항제1호 중 “제34조제3항에”를 “제34조제4항에”로 한다.

제64조제1항 중 “제34조제9항을”을 “제34조제10항을”로 한다.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64조제3항제1호의2 중 “제34조제13항을”을 “제34조제14항을”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생 략) <u><신 설></u>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대학의 장은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하 는 경우 다자녀 가구(출산 또 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모든 자녀인 학생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u> <u>③ · 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u>⑤ -----제4항에---</u> ----- ----- ----- ----- -----
<u>② · ③</u> (생 략) <u>④</u> 교육부장관은 <u>제3항에</u> 따른 시험에서 「장애인복지법」 제 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 애인 응시자,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응시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 구 지참 허용, 시험시간 연장,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을
포함한 편의제공 계획을 마련
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
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
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
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
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
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
지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
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
시할 수 없다.

⑦ 제5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
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

-----.

⑥ 제4항에-----

-----.

⑦ 제6항에-----

-----제4항에-----
-----.

⑧ 제6항에-----

-----제4항에-----

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
교육(人性敎育)을 이수하여야
한다.

⑧ 시·도교육감은 제3항에 따
른 시험의 시행에 대비하여 그
시험의 출제기관에 위탁하여
유사한 형태의 모의시험을 시
행할 수 있다.

⑨ 누구든지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시험의 문제가 공개되기
전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
출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
다)을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
다. 이 경우 출제위원의 지정,
위촉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령으로 정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
제위원으로 지정 또는 위촉하

-----.

⑨ -----제4항에--

-----.

⑩ -----제4항-----제9항
에-----

-----.

⑪ -----제4항에--

-----.

⑫ -----제4항에--

려고 하는 사람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출제위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⑫ 국세청장은 제1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⑬ (생략)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②
(생 략)

③ 대학의 장은 입학전형에 응
시한 사람 중 국가유공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학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⑬ ----- 제 12 항 에 -----

⑭ (현행 제13항과 같음)

제34조의4(입학전형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및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

수 있다.

④·⑤ (생략)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 입학연도의 4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기본 방향 및 과목, 평가방법, 출제 형식

2. 3. (생략)

② ~ ⑥ (생략)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9항을 위반하여 시험문제가 공개되기

-----.

④·⑤ (현행과 같음)

제34조의5(대학입학전형계획의 공표) ① -----

-----.

1. 제34조제4항에-----

2. 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62호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

제64조(벌칙) ① 제34조제10항을

전에 그 시험문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u>제34조제13항을</u>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한 자 2. ~ 4. (생략)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현행과 같음) 1의2. <u>제34조제14항을</u>----- ----- ----- ----- 2. ~ 4. (현행과 같음)
---	--